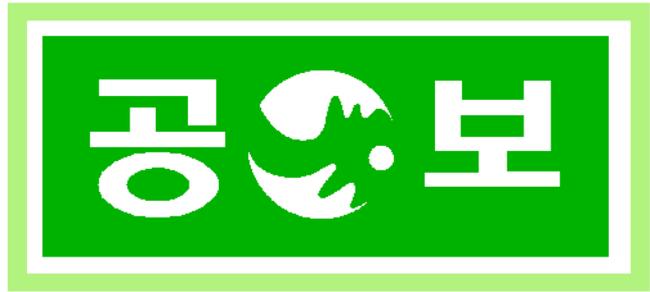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기 관 의 장	기 관 의 장



제 725 호 2011. 12. 15(목)

조 례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626호[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회 람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19-7207 행정720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유종오



2011년 12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626호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수거식 화장실

부과기준	수 수 료	
	수집·운반	처 리
18리터	292원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구 분	수 수 료	
	수집·운반	처 리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16,630원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1,180원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

-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수수료를 말한다.
- ※ “처리”는 분뇨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한다.
- ※ 수집·운반비 중 10원 미만은 실사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1991년 4월 23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책정 이후 20년간 동건
- 최근 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물량의 급격한 감소로 대행업체의 경영난 가중
- 2010년 10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조사·용역(시 일괄추진) 결과를 토대로 수수료 인상·조정 추진

2. 주요내용

-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상에 맞도록 조정 [별표]
- 가. 수거식 화장실(18리터) : 현행 177원 → 변경 292원
- 나.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 기본요금(750리터까지) : 현행 11,045원 → 변경 16,630원
 - 초과요금(100리터마나) : 현행 772원 → 변경 1,180원